#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46

발의연월일: 2021. 10. 25.

발 의 자: 추경호・김정재・金炳旭

정운천 · 최형두 · 임이자

윤창현 · 조명희 · 김용판

김예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이익을 환류 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시 기업의 투자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1년이던 초과환류액 이월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였으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은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1년만 적립(이월)되는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하에서는 기업들이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환류금액을 집행하더라도 환류 시기의 선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존재함.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와 전세계적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반강제적으로 2020년과 2021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위드 코로나 시대인 2022년에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 는 유인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 역시 2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줌으로써 불균형했던 과세의 형평을 바로잡고,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다수 기업에 발생한 미환류소득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2제5항 중 "다음 사업연도의"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로, "해당 사업연도의"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직전 사업연도에"를 "직전 2개 사업연도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역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
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	5
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	
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	
는 일부를 <u>다음 사업연도의</u> 투	<u>다음 2개 사업연도의</u>
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	
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	
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u>다음 2개 사업연도의</u>
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
⑥ <u>직전 사업연도에</u> 제5항에 따	⑥ <u>직전 2개 사업연도에</u>
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	
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	
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	
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